

한국에서 알바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D-2 · D-4 유학생 시간제취업 완전정복
허가 시간 계산부터 신청, 금지 업종, 처벌까지

- 내가 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3분 만에 계산
- 절대 하면 안 되는 알바 한눈에 보기
- 하이코리아 신청 7단계와 서류 체크리스트
- 유학생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15가지 Q&A

이 책을 읽는 방법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유학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바꾸어 썼습니다.

이런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 ✓ 알바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유학생
- ✓ 내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유학생
- ✓ 이미 일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유학생
- ✓ 알바 자리를 **바꾸거나 하나 더 늘리려**는 유학생

급하면 여기부터 읽으세요

2장

내 알바 가능 시간
계산하기

4장

절대 하면 안 되는
알바 목록

5장

신청 절차
7단계

부록 B

시간 계산
워크시트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허가를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하루만 일했어도 불법 취업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언제나 **허가가 먼저, 일은 그다음**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입국 관련 지침은 자주 바뀌고, 같은 상황이라도 학교·관할 출입국·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학교 국제처(유학생 담당자)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자료만 믿고 행동해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차

전체 10장과 부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알바 전에 외워야 할 3가지 원칙	기본
2장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핵심
3장	한국어 실력이 알바 시간을 바꿉니다	핵심
4장	할 수 있는 일, 절대 안 되는 일	핵심
5장	허가 신청 7단계	실무
6장	서류 체크리스트와 반려되는 이유	실무
7장	알바를 바꾸거나 하나 더 할 때	실무
8장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주의
9장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의
10장	알바하면서 놓치기 쉬운 5가지	생활
부록 A	유학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5	Q&A
부록 B	내 알바 가능 시간 계산 워크시트	양식
부록 C	용어 사전과 문의처	참고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 졸업 후 구직 비자(D-10)의 총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 일부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학생은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학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우리 학교가 인증대학인지 아닌지에 따라 알바 시간이 달라집니다.

알바 전에 외워야 할 3가지 원칙

이 세 문장만 기억해도 유학생이 겪는 문제의 90%는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 1 · 허가가 먼저, 일은 그다음

유학 비자(D-2)와 어학연수 비자(D-4)는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일하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려면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 "신청은 했으니까 일단 일하면서 기다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청 중에 일하는 것도 **무허가 취업**입니다.

원칙 2 · 허가서에 적힌 그대로만

허가서에는 **어느 가게에서, 무슨 일을, 언제까지, 주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 순간부터 허가받지 않은 일이 됩니다.

- 사장님이 다른 지점으로 보냈다 →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홀 서빙으로 허가받았는데 주방 일을 한다 →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일한다 → 그날부터 위반입니다

원칙 3 · 학교 확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국제처·유학생 담당자)가 발급하는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성적과 출석을 보고 확인서를 써 줍니다. 즉, 성적이 나쁘면 알바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일

A 학생은 카페 알바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달 뒤 사장님이 "옆 건물 새 매장에서 일해 달라"고 했고, 같은 사장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바뀌면 사장님이 같아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허가 **전에** 일하기 · 허가서와 **다르게** 일하기 · 허가 **시간을 넘겨** 일하기. 이 세 가지가 유학생 알바 문제의 거의 전부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줄을 찾으세요.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표

내 과정	한국어 요건	요건 못 채웠을 때	요건 채웠을 때 (학기 중 주중)	우대 인정 (+5시간)	주말·공휴일· 방학
어학연수생 (D-4-1)	TOPIK 2급 이상	주 10시간	주 20시간	주 25시간	주 25시간 무제한 아님
전문학사·학사 1~2학년 (D-2)	TOPIK 3급 이상	주 10시간	주 25시간	주 30시간	제한 없음
학사 3~4학년 (D-2)	TOPIK 4급 이상	주 10시간	주 25시간	주 30시간	제한 없음
석사·박사 (D-2)	TOPIK 4급 이상	주 15시간	주 30시간	주 35시간	제한 없음

※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기준. 학교와 관할 출입국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 요건은 TOPIK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세종학당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을 보세요.

※ 2026년부터 일부 전문대학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학생은 TOPIK 3급 이상이면 주 3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도 취업할 수 있지만, **주 30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주말·방학 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방학에는 무제한"은 **학위과정 유학생(D-2)에게만** 해당합니다. 어학연수생(D-4)은 방학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요건을 못 채우면 **주말과 방학에도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못 채웠지만 방학이니까 많이 해도 되겠지"는 틀린 생각입니다.

내 시간을 계산하는 3단계

1 내 과정을 확인합니다

어학연수생인가요, 학부생인가요, 대학원생인가요? 학부생이라면 지금 몇 학년인가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이나 표준입학허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내 과정에 필요한 TOPIK 급수를 가지고 있나요? 없다면 표의 "요건 못 채웠을 때" 칸이 내 시간입니다. 있다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3 우대 요건이 있는지 봅니다

① 우리 학교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인가요? ②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가요? ③ TOPIK 5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 5시간**이 더해집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기

예시 1 · 학부 2학년, TOPIK 3급, 일반 대학

학기 중 주중에는 **주 25시간**까지. 주말·공휴일·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시 2 · 학부 4학년, TOPIK 3급만 있음

3~4학년은 **TOPIK 4급**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못 채웠으므로 **주 10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주말과 방학에도 주 10시간입니다. 3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예시 3 · 어학연수생, TOPIK 2급, 입국 4개월째

어학연수생은 **입국(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알바를 할 수 없고, 2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두 곳에서 일할 때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곳은 **최대 2곳**이고, 두 곳의 시간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A 카페 15시간 + B 편의점 15시간 = 30시간이므로, 주 25시간이 상한인 학생은 이미 초과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알바 시간을 바꿉니다

TOPIK 급수 하나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알바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국어 공부가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급수 하나가 만드는 차이

10시간 요건 미달 학부생 주중 한 주	25시간 요건 충족 학부생 주중 한 주	30시간 우대 인정 학부생 주중 한 주
------------------------------------	------------------------------------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10시간과 주 25시간은 한 달로 계산하면 약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TOPIK 한 급수의 가치가 그만큼 큼니다.

한국어 능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TOPIK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과정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전문학사·학사 1~2학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이수
학사 3~4학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이수

※ TOPIK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전에 본 시험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 세종학당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한국어를 못해도 인정받는 길 — 영어트랙 특례

전 과정을 영어로 공부하는 **영어강의 전용 과정(영어트랙)** 학생은 영어 성적으로 한국어 요건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TOEFL 530(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공용어인 나라에서 온 학생은 증빙 서류 자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한국어 성적이 없어서 주 10시간만 가능하다고 포기했던 학생이라면, 이 특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5시간 우대, 나는 해당될까?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주 5시간이 더해집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증빙을 직접 내야 합니다.

우대 요건	확인하는 방법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교육부·법무부가 매년 인증 대학을 발표합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인증대학인지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작년에 인증대학이었어도 올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학기 A학점 이상	성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기준을 다르게 안내하는 학교도 있으니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TOPIK 5급 이상	성적표로 확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함께 인정하는 안내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배경

2026년부터 대학 인증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불법체류율 기준이 낮아지고, 학생들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 기준은 높아졌습니다. 학교가 인증에서 탈락하면 재학생의 알바 시간(+5시간)에도 영향이 갑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학기마다 한 번씩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절대 안 되는 일

시간을 지켜도 **업종이 잘못되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배달은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보통 허가되는 일

- ✓ 일반 음식점·카페의 서빙, 주방 보조
- ✓ 편의점·매장 판매, 상품 정리
- ✓ 사무 보조, 행사 진행 보조, 관광 안내 보조
- ✓ 학교 안에서 하는 근로장학, 전공과 연결된 보조 업무
- ✓ 통·번역 보조 (개인 과외나 어학 강의는 제외)

허가되지 않는 일

- ✗ **건설업** —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부터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가장 위험한 업종입니다
- ✗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라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 **제조업(공장)**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
- ✗ **개인 과외, 어학원 회화지도, 학습지 교사** — 이는 E-2 등 다른 비자의 영역입니다
-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등 풍속영업
- ✗ **파견·도급 형태,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 직접 고용이 아니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 **선원 취업** 관련 업종
- ✗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근무지** — 거주지·학교에서 통근 1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보지만, 관할청과 학교에 따라 다르게 안내합니다

금지 업종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조건
제조업(공장)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중 하나를 갖추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건준수 확인서 와 고용주 신분증 사본 을 더 내야 합니다.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회화지도가 아닌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가 발급하고 공적 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와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포함) 를 내야 합니다. 외국어회화학원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학위과정 유학생이 방학 기간에 전문분야(E-1~E-7, 유흥 관련 E-6-2 제외)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친구가 하나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배달 앱은 외국인 등록번호만 넣으면 계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이 되니까 합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출입국이 허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배달로 적발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한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햇갈리는 상황 정리

친구 가게를 하루 도와주고 밥값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았다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보수 자원봉사는? 대가가 없으면 취업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봉사인지 근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서를 남겨 두세요.

유튜브·SNS 수익은? 시간제취업 허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허가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례금이나 수당을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굳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니는 학교 안에서 조교·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학교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 ✓ 일시적인 가사보조·사무보조 등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의 사례금
- ✓ 영화·방송에 1회성으로(연속되지 않게) 출연하고 받는 보수, 행사 참가·자문 등 비슷한 활동
- ✓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에 참여하고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 ✓ 교육부 기준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 ✓ 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 통역요원으로 연속되지 않게 통역하는 활동

학업과 연계된 활동		학업과 무관한 활동
소속 대학 안	허가 필요 없음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소속 대학 밖	시간제취업 허가 필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필요

※ 학업 연계 여부는 보통 지도교수 확인서로 판단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을 함께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학점을 받더라도 실질이 일반 취업에 가까운 외부 기업 인턴은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반드시 국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신청 7단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을 먼저 쓰고, 학교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입국에 신청합니다.

면제

신청 수수료
(원칙)

2곳

동시에 가능한
최대 근무처

1년

허가 최장 기간
(체류기간 내)

1 알바 자리를 구합니다

먼저 4장의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잘못 고르면 뒤 과정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을 씁니다

시급, 근무 장소, 하는 일,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무 시작일이 신청일보다 앞서 있으면 그 자체로 불허 사유가 됩니다. 시작일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3 학교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제처(유학생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성적과 출석을 확인한 뒤 확인서에 학교 직인을 받습니다. 학교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리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4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6장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5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이 훨씬 편합니다. 방문한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허가가 났는지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업무·기간·시간을 꼭 다시 읽어 보세요.

7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허가일 이전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도 "허가 나온 뒤부터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해 두세요.

시간 여유는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학교 확인서 발급에 며칠, 출입국 심사에 다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근무 시작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요"라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도 이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잡으세요.

출입국 방문 예약이 안 잡힐 때

예약이 몇 주 뒤까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② 취소분이 풀리는 시간대를 노려 보고, ③ 관할이 여러 곳인 지역이라면 다른 출장소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못 하는 기간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와 반려되는 이유

서류 하나가 빠지면 그날 하루가 날아갑니다. 출발 전에 이 목록을 한 번 훑어보세요.

기본 서류

- ☐ 여권 (원본, 유효기간 확인)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 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학증명서 또는 표준입학허가서
- ☐ 시간제취업 확인서 — **학교 직인 필수**
- ☐ 성적증명서 (어학연수생은 출석증명서)
- ☐ 한국어 능력 증빙 — TOPIK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주 서명 필수**
-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 요건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만**

※ 관할 출입국과 학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문분야 활동 등을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6가지

사장님이 주는 계약서에 아래 항목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여섯 가지가 없으면 허가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 **시급(임금)과 지급일**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근무 장소의 정확한 주소** — "○○점"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까지
- ☐ **하는 일(업무 내용)** — 허가서에 그대로 옮겨 적히는 항목입니다
- ☐ **근무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 **주당 근무시간과 요일** — 내 상한을 넘지 않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 ☐ **고용주 서명 또는 도장** — 빠지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서류 준비, 이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부터 확인(업종 확인) → ② 근로계약서 작성 → ③ 학교 확인서 신청(며칠 소요) → ④ 재학·성적증명서 발급(가장 마지막에) → ⑤ 하이코리아 신청.

증명서를 가장 먼저 떼어 두면 나중에 "발급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	이렇게 막으세요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다름	여권 영문 이름,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 이름의 철자와 순서 를 모두 똑같이 맞추세요. 성과 이름 순서가 바뀌거나 미들네임이 빠진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 누락	시급, 근무지 주소, 하는 일, 기간, 주당 시간, 고용주 서명. 여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한 시간이 상한을 넘음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내 상한을 넘으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정하세요.
증명서 발급일이 너무 오래됨	재학·성적증명서는 보통 최근 것을 요구합니다. 미리 떼어 둔 서류는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금지 업종	가게 이름은 카페인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유흥 관련 업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세요.

이름 표기, 이렇게 확인하세요

여권의 기계판독영역(맨 아래 <<< 기호가 있는 줄)에 적힌 철자가 기준입니다. 은행 통장, 학교 학적, 근로계약서를 모두 이 철자에 맞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알바를 바꾸거나 하나 더 할 때

가장 많은 유학생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문제를 만듭니다.

허가는 그 가게에만 유효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허가받은 사업장·업무·기간·시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모두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한다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업체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설명을 꼭 읽으세요)
같은 사장님의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	사업장이 다르면 변경 절차 가 필요합니다
기존 알바를 유지하면서 한 곳을 더 하려 한다	추가하는 근무처는 새로 허가 를 받아야 하고, 시간은 합산 됩니다 (최대 2곳)
하는 일이 바뀌었다 (홀 → 주방 등)	업무 내용이 달라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기간이 곧 끝난다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무처가 바뀌면 '재허가'가 원칙입니다

시간제취업 허가는 **근무처를 바꾸면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기도 하는데, 이 말을 믿고 먼저 일을 시작했다가 **그 기간이 무허가 취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학교 국제처나 1345에 한 번만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일하기 전에 처리**하세요.

빈 기간이 걱정된다면, 지금 알바를 그만두기 **전에** 새 알바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 됩니다.

알바를 그만둘 때 챙길 것

- ✓ 마지막 급여와 주휴수당을 다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유일한 증거입니다)
- ✓ 다음 알바의 허가 절차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할 때 시간 계산법

A 가게 12시간 + B 가게 12시간 = **주 24시간**입니다. 각각 상한 이내여도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출근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를 안 써 준다"고 할 때, 대부분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허가가 어려운 경우	설명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성적이 회복될 때까지 알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유학 비자는 공부가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막 첫 학기를 다니는 중이라 성적표가 없는 경우 는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 국제처에 확인해 보세요.
어학연수생인데 6개월이 지나지 않음	D-4 어학연수생은 입국 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 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률이 90% 미만 (어학연수생)	출석은 체류자격 유지의 핵심입니다. 출석률이 떨어지면 알바뿐 아니라 체류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초과학기 재학생	정해진 학기를 넘겨 졸업을 못 하고 남아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이 제한됩니다.
정규 학위과정 학생이 아닌 경우	학부는 정규 학생만 해당합니다. 대학원은 수료생·초과학기생, 논문 준비 중인 학생도 포함됩니다. 초과학기 제한은 사실상 학부에 적용됩니다.
D-2-5 연구과정 유학생	연구과정(D-2-5)은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무허가 취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허가 조건을 어긴 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9장을 보세요.

성적이 떨어졌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이번 학기 성적을 2.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② 그 학기에는 알바를 쉬거나, 학교 안 근로장학처럼 학교가 인정하는 방식이 있는지 국제처에 문의하세요. ③ 무허가로 일하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성적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성적과 출석은 알바보다 큰 문제입니다

성적과 출석이 나쁘면 알바 허가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학점 관리는 결국 비자 관리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장은 겁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에 없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출국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은 위반이 아닙니다. 허가를 아예 안 받은 경우와 허가는 받았지만 조건을 어긴 경우는 처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허가는 받았으나 조건을 어긴 경우 (시간 초과, 다른 가게, 다른 업무 등)
1차	위반이 가벼우면 범칙금(통고처분)을 내고 체류는 유지됩니다. 대신 범칙금을 낸 날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시간제취업이 불허됩니다.
2차	예외 없이 강제퇴거 가 원칙입니다.	남은 유학 기간 내내 시간제취업이 불허됩니다.
3차	—	유학 자격 자체가 취소 됩니다.

※ 건설업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위 단계와 관계없이, **1차부터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니다. 다만 학업 의지가 인정되면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남겨 둡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일이 따라옵니다.

- **체류허가 제한** — 범칙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뒤 체류 관련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연장, 변경, 재입국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 **졸업 후 진로 차단** — 시간제취업 위반 이력이 있으면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다릅니다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출국하는 처분이고, **강제퇴거**는 강제로 내보내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재입국 제한 기간도 강제퇴거 쪽이 훨씬 깁니다. 둘 다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몇 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는 틀립니다

무허가로 일한 기록은 시간이 지나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비자 변경을 신청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지급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 조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졸업하고 취업 비자로 바꾸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무허가로 일하고 있다면

가장 나쁜 선택은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하는 것"입니다. ① 일단 근무를 멈추고, ② 근로계약서·급여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한 뒤, ③ 학교 국제처나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하면서 놓치기 쉬운 5가지

허가를 잘 받아도, 아래 다섯 가지를 놓치면 손해를 보거나 체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1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조금 적게 준다"는 말은 법 위반입니다.

2 · 근로계약서는 꼭 받아 두세요

근로계약서는 허가 신청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급여를 못 받았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사장님이 써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 세금과 보험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밀리면 체류 관련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4 ·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신고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옮기는 것처럼 사는 곳이 바뀌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의 거소이전 신고는 14일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헛갈리지 마세요.

5 · 체류기간 연장은 미리

체류기간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후 심사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방학에 고향에 다녀올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학기마다 3분만 투자하세요

① 체류기간 만료일이 언제인가 ② 알바 허가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③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가 ④ 이번 학기 성적이 2.0을 넘는가. 이 네 가지만 학기 시작마다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졸업이 다가온다면

졸업하면 유학 비자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구직 비자(D-10)는 2025년 10월부터 **총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었고, 한 번에 받는 기간도 1년으로 길어졌습니다. D-10 상태에서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요건과 한국어 능력(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등)을 갖추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종 제한과 위반 이력에 따른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졸업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장으로 보는 핵심 정리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핵심 내용
순서	알바 자리 → 근로계약서 → 학교 확인서 → 출입국 허가 → 그다음에 출근
시간	학부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주중 25시간, 석·박사 30시간. 우대 인정 시 +5시간. 요건 미달이면 10시간(석·박사 15시간). 두 곳에서 일하면 합산 .
업종	건설·배달·택배·대리운전·풍속영업·과외는 불가 .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심사). 건설업은 1차 적발부터 출국명령 대상입니다.
변경	근무처가 바뀌면 재허가 가 원칙입니다. 일하기 전에 절차를 끝내세요. 동시 최대 2곳, 허가는 최장 1년.
기한	이사 후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부터 연장 신청 가능
금액	허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면제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위반	무허가 취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차 적발만으로도 1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2차는 강제퇴거가 원칙입니다. 졸업 후 D-10 전환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예외	교내 조교·근로장학생, 학업과 연계된 교내 연구·인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은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5

실제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Q. 신청은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하루만 먼저 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중에 일하면 무허가 취업입니다.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허가 후 출근하세요.

Q.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학위과정 유학생(D-2)이 한국어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어학연수생(D-4)은 방학에도 제한이 있고, 요건을 못 채운 학생은 방학에도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입니다.

Q. 두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최대 2곳까지 가능하지만,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두 곳의 시간을 합쳐서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Q. 친구 가게를 하루 도와주고 용돈을 받았습니.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았다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허가 없이 대가를 받는 일은 피하세요.

Q. 배달 라이더는 정말 안 되나요? 앱에서 가입이 되던데요.

플랫폼 가입 가능 여부와 출입국 허가는 별개입니다. 배달·택배·대리운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Q. TOPIK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학교 국제처에 확인해 보세요.

Q.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번 학기 성적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사이 무허가로 일하는 것은 훨씬 큰 문제를 만듭니다.

Q. 알바를 하면 체류기간 연장에 불리한가요?

허가를 받고 시간과 업종을 지켜 일했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 없이 일한 기록입니다.

Q. 사장님이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급여를 못 받아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는 피하세요.

Q. 허가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일했습니다.

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무허가 상태입니다. 우선 근무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법을 정하세요.

Q. 학교에서 확인서를 안 써 줍니다.

대부분 성적·출석·초과학기 등 요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그것부터 해결하세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5

(이어서)

Q.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인턴십)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이거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라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 밖 기업에서 하는 인턴은 학점을 받더라도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장의 표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Q. 졸업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유학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까지입니다. 졸업 후에는 D-10 등으로 자격을 바꾸어야 하며, 졸업 학기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Q. 급여에서 세금을 떼던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외국인도 소득세를 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뭘 해야 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세요. 늦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이라면

같은 질문이라도 체류자격, 학교, 관할 출입국, 지금까지의 이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미 위반이 있었던 경우나 자격 변경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학교 국제처, 1345, 또는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빨리 물어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①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진 ② 여권 정보면 ③ 지금 체류기간 만료일 ④ 지금까지 받은 허가 내역 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이 다섯 가지만 준비해 두면 어디에서 상담하든 훨씬 빠르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알바 가능 시간 계산 워크시트

인쇄해서 직접 채워 보세요. 학기가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하면 좋습니다.

1. 내 체류자격은? (D-2-1 / D-2-2 / D-4-1 등, 외국인등록증 확인) _____

2. 내 과정과 학년은? (어학연수 / 전문학사 / 학사 1~2학년 / 학사 3~4학년 / 석·박사) _____

3. 내 TOPIK 급수 또는 사회통합 단계는? _____

4. 내 과정에 필요한 요건을 채웠나요? (예 / 아니오) _____

5. 우대 요건이 있나요? (인증대학 / 성적 우수 / TOPIK 5급 중 해당) _____

6.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은? (2.0 미만이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_____

7. 지금 일하는 곳이 있다면 주당 몇 시간인가요? _____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학기 중 주중) _____

주말·공휴일·방학 _____

학기마다 확인할 4가지

☐ 체류기간 만료일 → 언제인가요? _____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시간제취업 허가 만료일 → 언제인가요? _____

☐ 주소가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었다면 전입 후 15일 이내 신고)

☐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인가요?

용어 사전과 문의처

서류나 안내문에서 자주 만나는 말들입니다.

용어	뜻
시간제취업	유학생이 공부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지금 가진 비자의 원래 목적이 아닌 활동. 알바가 여기에 해당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통합신청서	출입국 민원에 공통으로 쓰는 신청서 양식. 하이코리아에서 내려받습니다.
시간제취업 확인서	학교가 "이 학생이 알바해도 괜찮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 학교 직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정부가 유학생 관리 수준을 평가해 인증한 대학. 재학생은 알바 시간 +5시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과정. 단계 이수로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통고처분)	출입국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 액수가 크면 이후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출국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한국을 떠나라는 처분. 강제퇴거보다는 가볍지만, 학업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강제퇴거	한국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 출국명령보다 무겁고, 재입국 금지 기간도 훨씬 깁니다.
D-10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구직 비자.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문의처	이럴 때 이용하세요
학교 국제처 (유학생 담당자)	확인서 발급, 우리 학교 기준, 성적·출석 요건. 가장 먼저 찾아갈 곳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출입국 관련 일반 문의.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방문 예약, 서식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임금 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 문제.
행정사	이미 위반이 있는 경우, 서류가 복잡한 경우, 자격 변경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를 조심하세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는 **몇 년 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20시간"이라고 적힌 학교 홈페이지도 아직 있습니다. 금액과 시간처럼 숫자가 나오는 정보는 반드시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한국의 출입국 제도는 복잡하고,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유학생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가 먼저, 일은 그다음"**이라는 원칙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학업과 한국 생활을 지켜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나쁜 선택은 **혼자 숨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빨리 상담할수록 해결 방법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 ① 외국인등록증을 꺼내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휴대폰 달력에 넣어 두세요.
- ②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면 **허가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③ 부록 B 워크시트를 채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두세요.

한국 유학생 아르바이트 완전정복 — D-2 · D-4 시간제취업 가이드

2026년 8월 발행 · 초판

발행 · 행정사법인 세움 | 홈페이지 www.seumbiz.com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련 지침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 또는 1345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